

『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,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재난취약계층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지원대상 : 재난취약계층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독거노인 등)
 - 지원범위 : 단독경보형감지기, 소화기 등 설치 / 전기·가스 등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
-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,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에 따라 가스누출, 전기누전 등 주택화재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